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민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1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발 의 자: 이민옥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김기덕, 김인제,
김지향, 박강산, 박승진,
봉양순, 송도호, 이상훈,
이원형, 임만균, 최민규,
최재란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 지원해오고 있음.
- 그러나 강소기업의 선정 시에만 선정기준, 선정 방법, 지원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을 뿐, 선정 취소 시에는 그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.
- 또한 이는 강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취업 또는 사업 연계 등을 도모하는 청년 및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소기업 선정 기본 취지에 반하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.
- 이에 따라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유 및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, 강소기업 선정의 기본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강소기업의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실과 사유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(안 제14조 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) ① · ② (생략) <u>〈신설〉</u>	제14조 (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</u>

문서번호

2023101300000012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이민욱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3.

회신일 : 2023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(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)제3항을 신설하여 강소기업 선정 취소에 대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취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박지영
	☎ 02-2180-7952
	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